

제71조(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보 칙

제72조(자료제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원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 기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3조(시정조치 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권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7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호원 또는 한국전산원의 임원 및 직원

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비밀유지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한 업무

제7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처리·저장·유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제79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장 벌 칙

제80조(벌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82조(벌칙 등) ①사실을 적시하여 제55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55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제55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55조제3호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55조제4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55조제6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55조제7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명의를 도용당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제55조제8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자는 해당 형벌 또는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83조(벌칙) ①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 판매 또는

진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5조(과태료) 제46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양수 등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
7. 제3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8.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적정한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기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2.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자
  13.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자
  14.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보호책임자 또는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5.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보호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자
  16.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17.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량의 정보를 전송한 자
  18.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9.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72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8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제4조(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71조제7호중 “제53조제3항 또는”을 삭제한다.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전기통신사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전자서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한국정보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0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원”으로 한다.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입장

● <http://FreeOnline.or.kr>

이 글은 지난 9월 23일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집중행동의 날, 대학로에서 있었던 제3차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입장

지난 9월 19일 정보통신부에서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논란이 많았던 통신질서확립법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7월 20일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표된 이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네티즌들은 [검열반대]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통해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시민단체 안을 수용한 결과라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인터넷 내용 검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더욱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해 온 네티즌들은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 1. 통신질서확립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과 별도로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온라인 매체를 특별히 규제하는 제도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마땅히 그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선을 넘을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우리의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권리가 있으며 또 우리는 충분히 이 권리를 행사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에게는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명분으로 네티즌들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통제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과 통제 권한은 사법부나 그에 준하는 기구에 속해 있다.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은 국민학교에서 이미 배운 대로이다.

더구나 이 법의 전신으로 1985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마땅히 흡수되어져야 했음에도 1999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삽입하면서 계속 물꼬를 유지해 왔다. 이제 이 법이 인터넷 주소관리나 내용 규제의 권한을 정보통신부에 부여하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또다시 왜곡된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따라서 통신질서확립법,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이 매우 중대한 사회적 사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가 기형적인 형태로 이 법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 2.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일체의 인터넷 검열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신질서확립법 뿐 아니라 9월 2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이나 21일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인터넷 내용 등급제 도입을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이는 시민단체들의 안을 수용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이 기만적인 술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들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인의 전자우편 내용까지 감청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가하면 경찰이 전국 PC방의 IP주소와 MAC주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터넷의 표현들을 합법적으로 검열하기 위해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모든 시도들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익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시도들이 군사 정권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국민 통제의 관행 속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사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는 진지한 국민의 여론으로 청취되기 보다는 '훌리건'이나 '어글리 코리안'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네티즌 1600만의 시대에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특정 부처 홈페이지로 집중되는 형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온 국민을 범죄인이나 미성숙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접근권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세와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 3.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인터넷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비록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이 때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터넷이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온 다른 어떠한 매체보다도 현저하게 민주적이고 탁월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이 우리에게 제공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며 손쉬운 기술적 통제에 손을 벌리거나 국가 권력에 우리의 권리를 위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을 합법화하는 통신질서확립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하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모든 인류의 역사적 과정에 동참할 길임을 믿는다.

2000. 9. 23

###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네티즌 일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대자보,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성남청년정보센터, 시내버스바로세우기, 안티조선 우리모두, 진보네트워크센터,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통신자유를위한모임(넷츠고), 통신자유를위한모임(하이텔)

---

#### ● 의견은 여기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http://FreeOnline.or.kr> 한글파일 내려받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창국)

### 1. 법안 제43조(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에 반대함

법안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는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취지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자율표시제는 사전 검열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도입에 반대합니다.

### 2. 법안 제4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반대함

법안 제45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정보에 대해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 매체물배포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매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법안 제45조의 규정만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부과되어 있는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성상 아직까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제공자에게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 제45조는 청소년보호법의 문제 때문에 법률체계상 가능하지 않은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법안 제48조(금지행위)에 대한 의견

법안 제48조는 다양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는 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문제는 항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법안 제48조 제1호 내지 제5호는 현행 형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따라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과연 이번 법안에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안 제48조 제6호는 이른바 스토킹에 관한 문제이며, 제7, 8호는 이른바 '통신설명제'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부

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일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 시민사회단체 의견 종합

온라인 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 2000년이 온라인 공간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해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  
지난 7월 20일에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통신  
질서확립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  
성을 해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정안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  
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  
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자유  
와 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가 현실세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온라인 공간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전통적인 정부규제방식으로 접근하고, 시민  
사회와 이용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보통신  
부와 산하기관을 통한 직접 개입과 권한강화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  
다.

그런데도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채  
문제조항 몇 개를 수정·삭제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군다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발표해지만 실제로는 문제되었던  
규정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어 정보  
통신부가 과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 중요한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  
하게 추진하려는 정보통신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3개 법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지적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과정없이 통  
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면 21세기의 첫해를 여는 2000년 올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정부기관  
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해로 기억될 것이다.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크게 개인정보보호부분과 정보통신망안전성 확보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개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영역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법률구조상의 이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침해현상이 비단 정보통신망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되어야 한다는 학계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현행법률에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인터넷도메인주소자원관리에 관한 내용까지 추가하여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들이 하나의 법률에 혼재되어 있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정보통신영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문제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안에서 기형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내용은 이용자의 정보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법률구조상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은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규정들을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조항(인수·합병에 관한 조항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의 입장보다는 사업자의 입장이 고려된 측면이 많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개정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수집하고 이용할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개정안 제28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양도하거나 인수·합병시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은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지하는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하는 개정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한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최초의 정보수집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지 않고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한 점(개정안 제32조),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부 산하에 두고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게 한 점(개정안 제36조)도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할 조항이다.

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여전히 겸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되어온 인터넷등급제에 대해 정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겸열적 요소,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즉, 개정안에서 제시된 인터넷등급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신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를 정보제공자 일반인 비영리단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대상화함으로써 사전검열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그 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자율등급이 아닌 사실상의 국가에 의한 정보등급표시제를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이므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제시된 현재 개정안의 관련 부분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라. 서비스제공자의 자체검열을 강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49조에서 제48조의 금지행위인 명예훼손, 허위정보유통, 사생행위 조장, 음란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자는 관련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정보의 내용이 명예훼손인지, 허위정보인지, 음란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삭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조항은 단지 정보의 중개자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검열을 강요하고 해당정보를 임의삭제 가능케 하여 현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마. 인터넷 주소자원은 전세계적으로도 민간자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의 제16조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해 정통부가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짜고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재단법인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인터넷주소정책에 대한 기능수행이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져왔고, 현재도 진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통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전세계적인 흐름인 인터넷 도메인주소관리에 대한 민간자율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2.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가. 국정원에 의해 공공·민간기관의 정보통신망이 통제될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장안 제6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단체등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국가정보원의 관여를 인정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리고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센터로 하여금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가정보원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통신시설이 상호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관여는 민간기관에까지도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온라인 의사표현 수단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의 제15조 제3호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혹은 항의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나 말머리 달기 운동,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표현수단인 게시판글올리기나 항의메일 보내기 등은 현실공간에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것으로 이는 현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선불리 규제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특성을 지닌 온라인 매체에서의 이용자 의사표시 행위를 매체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제약하려 하는 것은 온라인 공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3. 전기통신사업법(안)

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인터넷 정보를 검열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제53조에서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과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에 대한 심의, 인터넷등급제 촉진,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분쟁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불온통

신에 대한 개념이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이라는 문구만 바꿔었을 뿐 사실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정보에 대한 검열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될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는 거의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바, 이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의 촉진은 결국 타율적인 인터넷 등급제를 의미한다.

정보통신부는 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인터넷등급제가 사회적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보도자료를 낸바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를 촉진"하도록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의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등급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말 그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이용자를 포함한 시민, 민간단체들에 의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등급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개정안중에서 특히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개인들 사이의 명예훼손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조항은 사법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개인들 사이의 명예훼손분쟁을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

라. 위헌소지가 있는 정통부장관의 삭제명령권과 불온통신규정 문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에는 그동안 위헌소지가 많다고 비판받아온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명령권, 애매한 내용의 불온통신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위헌소지가 없는 형태로 개폐하는 부분이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10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함께하는시민행동 · PeaceNet 역음

온라인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권력집중현상을 경계한다

군대는 그냥 놔두면 적을 만들어 전쟁을 하려 하고,  
권력은 그냥 놔두면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하려 한다.

김기중 (변호사)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온라인표현수단(이하 온라인매체)은 이제 특별한 개인이나 단체의 전 유물이 아니라 영리, 비영리부분을 포함하는 우리 모두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이 되었다. 온라인표현수단을 매개로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한 모임이나 회사들이 형성되고 기존의 개인이나 모임, 회사도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온라인매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하 온라인커뮤니티, 이제 가상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현실사회 의 개인과 조직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한 법제나 행정조직, 규제 등은 곧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관계 조직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면서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우선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사실화하려 하였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정보통신부에 대한 권력집중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이다.

정보통신부가 준비중인 법안은 [개인정보보호 및 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 관한 법률](이하 질서확립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이용촉진법)을 개정한 법률안이다. 언론에는 정보통신부가 내 놓은 안의 특징이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 질서확립법은 이용촉진법을 개정하는 형식이나 사실상 새로운 제정법률안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여러 형태의 행정규제장치를 신설, 강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먼저 위 질서확립법은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행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기존 위원회의 강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내용등급분류권한과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 기관의 설립, 온라인사회의 얼굴로 기능하고 있는 인터넷도메인네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신설되거나 권한이 확대되는 기구들이다. 이는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권한이 정보통신부와 산하단체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권리의 집중은 어느 경우에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합리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본다.

둘째 위 질서확립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여부를 가지고 있는 중인 만

큼 이를 확대규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확대된 내용의 '불법정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로 고지하도록 한 것, 문서에 의한 고지에 '특별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한 것은 일상적인 행정검열을 도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명예훼손, 허위정보, 사행행위, 음란한 영상 등의 포괄적 개념들은 사법부에서도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논란이 중단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정보'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권한남용을 법률이 보장하는 것과 같다.

셋째 위 질서확립법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며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 질서확립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등급제는 행정규제라는 점에서, 나아가 자칫 잘못운영되면 행정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용등급제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분(영리이든 비영리이든)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등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업서비스가 시행중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우선 이를 이용하여 자녀들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민간조직들이 합리적이면서 자율적인 내용등급제의 시행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선부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넷째 위 질서확립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물론 이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책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와 산하 단체로 하여금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직접적인 행정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위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질서확립법 제2조 제3호)를 모두 포함하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도 이에 해당될 수 있어, 비영리민간단체도 정보통신부는 물론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 질서확립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정보와 이용기록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경우에 이용정보와 이용기록을 보존해야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제출명령에 응해야 함은 물론 수사기관의 제출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권한은 정보통신사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억압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불량이용자 목록작성의 문제, 독립적이어야 할 도메인 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권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모두 지적할 여유가 없을뿐더러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 위 질서확립법의 개념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질서확립법은 지금까지 개발된 매체중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매체를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입과 귀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해 '질서확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순하다.

과거 군사정권아래서 우리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라는 미명아래 입과 귀를 봉쇄당한 경험이 있다. 언론의 등록은 제한되었고 그나마 보도지침에 굴복해야 했으며 불법적인 금서목록에 따라 출판은 제한되었다. 영화, 연극, 심지어 노래와 무용까지 검열에 의해 헛빛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유지를 명목으로 내 세운 법률에 의해 시행된 합법적인 것이었으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러한 조치가 법의 탈을 쓴 권력남용의 극단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 위헌적인 장치들이 하나둘 사라져 가고,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매체로 여겨지는 온라인매체가 개발되어 온 국민의 입과 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정부와 국가는 인류가 개발한 매체중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이 매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온라인매체의 폐해(청소년보호, 온라인 성폭력, 온라인범죄 등)를 방지한다는 명분아래 너무 쉽게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적 개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온라인매체가 주는 폐해를 인정하나, 온라인 매체의 폐해가 정부와 국가의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한다. 온라인매체의 폐해는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갈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행정규제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질서확립법 추진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1. '불온통신(불법정보)' 규정은 검열의 일종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1.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다양한 입장의 단체, 개인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2000. 7. 20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성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진종합법률사무소)

### I. 머리말

정보통신부가 2000년 7월 공청회에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투성이의 법안이었다. 우선 이 법안의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 도메인 이름의 관리,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의 규제, 인터넷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현안들을 세계 각국의 여러 법제를 이리저리 '요령껏' 참조하여 '적당히' 째어 맞춘 데에 있었다. 게다가 분야마다 분쟁조정이란 명목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각종 위원회를 정통부 산하에 설치하고, 정통부장관에게는 온갖 규제·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정통부가 위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같은 해 9월 입법 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양 법안에서 모두 문제가 되었던 핵심 쟁점은 정통부가 도입하고자 시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이었다.

인터넷 환경 아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인터넷상의 사전검열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표현매체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꼴치 아픈' 문제, 즉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등급제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는 과연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 II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무엇인가?

#### 1. 출몰하는 쟁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법률안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6일 공포되었지만 작년 하반기 시민사회로부터 '인터넷상의 검열'이라 하여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의 조항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보통신부가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란 이름으로 도입하고자 시도하였던 '인터넷 내용등급제'이다. 들리는 바로는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조항들이 삭제되었다는 것이지만, 이른바 '자살 사이트'와 '폭탄제조 사이트' 등 인터넷 환경의 '불온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고 보면 '인터넷 내용등급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 2.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개념과 유형

## 가. 개념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라는 용어의 개념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기술적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적 규제에는 종래 널리 알려진 것으로 차단목록 방식(blacklisting)과 허용목록 방식(whitelisting)이 있는데, 이와 같이 O,X식으로 이루어지는 일괄 차단 내지 허용 방식은 해당 목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마다 등급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등급에 의한 선별방법(rating)을 취하고 있어서 종립적 방식으로 불린다. 즉, 이러한 등급제 방식은 인터넷 정보에 유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값을 삽입하여, 웹브라우저나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인터넷 정보에 삽입되어 있는 등급값이 부모가 미리 해당 청소년에게 설정해 놓은 허용된 값보다 크지 않을 때만 작동되는 방법이다.

요컨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미리 설정된 등급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터넷 내용 선별·차단 소프트웨어(filtering or blocking software)가 작동됨으로써 성인의 불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종립적인 기술적 규제 방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나. 유형

일반적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유형은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등급판정의 행사주체에 따라 '자율등급시스템'과 '제3자 등급시스템'으로 크게 구분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내용규제 방법 중 자율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양 유형만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등급제를 인터넷상에 운영하는 국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술한 양 유형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①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국가가 주도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와 호주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행정기구인 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이 제시한 차단목록 고시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에게 사회질서 및 국가안보, 종교 및 민족간의 조화, 공중도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컨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반하여 호주는 입법에 의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실시를 강제하고 있다. 즉, 호주의 1999년 개정 방송법(온라인서비스법)은 호주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급분류상 RC(Refused Classification)나 X등급의 컨텐츠는 유통이 금지되고 R등급의 컨텐츠는 방송청으로부터 성인임을 확인을 받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

다. 요컨대 청소년 유해정보(R등급의 정보)는 방송청이 인정하는 접근통제시스템(Restricted Access System)을 통하여 성인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은, 첫째 국가의 관할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매체인 인터넷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점, 둘째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등급을 판정하고 차단한다는 것은 비용, 현실성, 기술적 한계 등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 셋째 국가에 의한 검열의 위험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여론이 높고, 위험적인 소지를 안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 ②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이것은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통일적이고도 객관적인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고, 인터넷 이용자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내용선별을 위한 기술표준(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 PICS)'을 바탕으로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나 SafeSurf와 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개발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터넷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 내용등급협회(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 ICRA)를 구성하고 등급기준을 만들어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컴퓨터 관련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급표시방법을 표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높아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PICS 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사의 제품 또는 차단소프트웨어나 웹브라우저에서 등급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거나 등급표시가 안된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내용등급에 의한 선별방법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웹사이트의 99% 이상이 등급표시가 없이 유통되고 있어서,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1999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인터넷 컨텐트 정상회의(Internet Content Summit)에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로 2000년 초 베델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컨텐츠업체와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사회적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채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행동강령에 따라 각 업체는 불법적인 내용물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자율규제 시스템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견의안의 핵심사항으로 '자율'이 바로 인터넷 컨텐츠의 등급 및 선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용자가 자율등급제(self-rating)와 여과장치(filtering system) 중에서 자신들이 그 모델을 직접 선별할 수 있도록 전세계 컨텐츠업체들은 자신들의 컨텐츠에 라벨을 붙여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내용의 자율규제 모델은 유럽 각국의 기본적인 규제 방안으로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③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이 방식은 인터넷상의 컨텐츠에 대해서 정보제공자가 아닌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인 제3자가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등급서비스 중에서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해서는 여러 장단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적 장치로서 필요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EU의 '안전한 인터넷의 이용증진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 on Promoting Safe Use of the Internet)'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 인터넷 내용등급'(Internet Content Rating for Europe : INCORE) 협회의 보고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3. 정보통신부가 추진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내용과 그 경과

#### 가. 2000년 7월 20일 공청회에 제시한 개정안

당초 정통부가 마련하여 2000년 7월 20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청회 개정안'으로 줄임)은 불법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유해정보와 구분하고 별도의 취급을 하고 있다. 즉, 불법정보를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및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구별하여 정의한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제작·유통 또는 매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정보등급의 기준,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등급표시의무를 지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국한된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등급분류서비스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적정하지 않는 등급이 표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조정의 주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 도서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는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접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청회 개정안 전반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자율규제가 기반이 되어야 할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에 국가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등급기준, 표시방법, 등급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고지하여 이를 삭제하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결국 정부에 의한 인터넷상의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본래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자율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자율적인 기준설정과 선택권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것인데, 공청회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성을 배제한 채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을 강요한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통부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정안을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정부당국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로부터 연일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 나. 2000년 9월 2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

공청회안이 사실상 국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이후 같은 해 9월 23일자로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우선 법안의 명칭이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대폭 도입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입법예고 개정안에서는 공청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의 구별을 전제로 한 정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불법정보 규제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조항도 삭제되었다.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와 관련해서도 공청회 개정안과는 달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사업자 등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정보내용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등급부여 및 표시의 의무화에서 권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등급의 기준과 표시 방법도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등급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으로부터 관련단체의 사전 의견청취를 한 후 정하는 쪽으로 다소간의 방향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급표시의무자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규정하여 공청회 개정안과 비교할 때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공청회 개정안과는 달리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입법예고 개정안은 공청회 개정안과 비교할 때 시민단체 등의 비판 내용을 수용하여 개선하려고 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법안의 규정 내용이 '의무 부여'에서 '권장'이나 '의견 청취'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의무 부여를 강제하는 우리의 행정 현실을 되돌아보거나, 정보통신 기반과 관련하여 지시·감독 내지 후견·조정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정통부 또는 그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법안의 수정은 다소 과장해서 말하면 여론무마를 위한 '레토릭' 차원의 '수위 조절'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본질적인 문제는, 법규법과 법현실의 괴리가 남다른 우리의 상황 아래에서는 입법예고 개정안의 '불완전한'(?) 근거 규정만을 가지고도 정통부 산하의 법정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율규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얼마든지 '검열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극악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 다. 2001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개정 법률'로 줄임)로 공포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정보 내용등급자율표시제', 즉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조항과 문구가 모두 빠져 있다.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정 법률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되어 고시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또한 개정 법률은 이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정보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의무와 보관의무 및 그에 관한 벌칙규정들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 관련규정 내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고 및 자료제출의무 관련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상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이 되는 매체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의 내용들은 일종의 주의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른다. 또한 벌칙규정과 관련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등이 개정 법률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 나타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상 문제점이 온라인에서는 더욱더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개정 법률은 부칙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를 삭제하는 대신에, 이 규정의 문구를 조금 손질하여 개정 법률의 벌칙조항 중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종래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 2에 관해서는 그 규정 내용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개정 법률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고 하겠다.

### III 인터넷 내용등급제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는가?

#### 1. 충돌하는 쟁점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성인의 불 편리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술적 규제 방식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이론바 성인정보(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 성인층의 접근을 보장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은 차단하고자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근본취지는 환영받을 만하다. 문제는 이론바 성인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본래 목적과는 별개로 등급제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양상이다. 정통부가 추진한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던 이유도 국가가 이것을 주도하게 되면 인터넷상의 검열을 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어떤 측면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명문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와 검열이란 '사전 제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은 영미법상 일찍이

1695년 영국에서 사전검열과 허가제를 규정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확립되었고, 그후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의 체택으로 성문화되었으며, 유명한 Near판결 아래로 미 연방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법으로 자리 잡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구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는 위 결정에서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하여 사전검열의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이러한 검열의 개념을 전제로 할 때, '사전'과 '사후'라는 시간적 관련성을 비롯한 그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선 국가 주도이든 자율적이든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자유인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과 같은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차단(blocking) 내지 내용선별(filtering) 기술은 정부에 의한 검열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즉, ACLU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등장과 관련하여 ① 내지 ⑥과 같은 일련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① PICS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컨텐츠 등급판정을 위한 통일된 방법이 제시된다. ② 한 두 개의 등급시스템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인터넷상에서의 표준이 된다. ③ PICS와 시장지배적 등급시스템이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자동적 초기값(automatic default)으로 설정되게 된다. ④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표현들은 이러한 자동적 초기값의 설정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즉,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표현들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차단된다. ⑤ 검색엔진들(search engines)도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된 사이트들이나 정보들을 검색결과로서 제시하지 않게 된다. ⑥ 정부가 자율등급을 입법으로 강제하거나 부적절하게 등급을 표시하는 것을 형사별로 처벌하게 된다.

ACLU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의한 검열가능성을 강조하지만, 과연 시간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사전 검열'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인쇄매체에 비한다면 인터넷에서 '사전'과 '사후'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한번의 클릭만으로 전세계의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터넷에서 사전에 표현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이 규정한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의 의미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이고, 인터넷에서 사전·사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삭제나 수정은 사전제한금지의 정신에 따라 비록 형식적 의미에서는 '사후'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CLU의 주장처럼 내용선별·차단 소프트웨어에 따라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표현들이 그 내용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선별 내지 차단되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개념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침해의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검열의 형식적 주체와 의미에 차안하여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으로 사전검열이 용이하게 된다는 ACLU의 지적은 특히 공감되는 바가 많다.

그런데 더군다나 당초 정통부가 도입하고자 시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등급제로서, 공청회 개정안이나 입법예고 개정안은 모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등급제 운영의 중심에 놓고 있어서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하나의 절차로서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청회 개정안이나 입법예고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등급의 기준, 표시방법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등급표시에 의무를 부여하거나 사실상 의무부여와 마찬가지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사후심의의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유통의 쌍방향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간의 의견교환기능의 강화'라고 하는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내용등급제 아래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성인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를 받지 않고는 정보의 유통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술한 것처럼 인터넷상에서는 사전·사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는 정보 유통의 '사전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것은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 CDA)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1996년 6월 12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제시스템으로서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위 판결은 그 사실인정에서 CDA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선의의 항변(Good Faith Defense)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던 신용카드, 성인증명번호, 등급표시제(tagging)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이 경제적 이유라든지 기술적 이유를 근거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다음해 연방대법원은 CDA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연방대법원도 "표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이지 않으면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바, 항변 규정은 그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연방지법의 사실인정을 지지하였다.

#### IV 맷음말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ACLU의 주장처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되 자율성이 담보되는 형태의 등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시민사회의 형성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율규제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회의하는 쪽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 여러 절충적 견해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방향을 달리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간의 차이는 인터넷이란 새로운 표현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가 하는 표현매체의 성격 규명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말해 인터넷이란 표현매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견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자유와 책임의 '성분비율'이 달리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병리적 현상은, 인터넷에서의 개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표현매체로서의 자유보다는 규제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일군의 학자들 쪽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가 환경 정비라는 면에서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쌍방향성 표현매체로서 이제 막 기능하기 시작한 인터넷상의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그 내용규제를 설불리 제도화하는 것의 역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그것이 자유와 관련된 규제인 경우에는 "빨리 빨리 하자"는 행정적 요구 못지 않게 "천천히 하자"는 사법적 고려도 중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사법적 고려야말로 최우선적 과제라고 할 것이고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헌법적 검토이다. 우리가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통신질서확립법',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

<http://FreeOnline.or.kr>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혹자는 이 법을 가리켜 '통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한국판 통신품위법'<sup>1)</sup>이라고 말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이 법은 아예 법률명을 '개인정보보호 및 전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바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단지 약칭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법률안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전체 조항의 대부분을 소위 '전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전한 (사회) 질서 확립'이라는 말은 결코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섬뜩한 이유는 우리의 왜곡된 근대화 과정과 군사 정권의 모토 속에서 되풀이되었던 말이기 때문이다. '전전'이라는 말이 보편화될 때, 특정 집단의 세계관과 윤리를 절대시하면서 다른 세계관과 윤리를 수렴하고 탄압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전전'이라는 말 아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법률에서도 '전전한 정보통신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많은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상의 어떤 표현에 대하여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처리'라는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불법으로 '간주'된 정보를 삭제하거나(제28조) 취급을 거부하도록(제29조)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정보가 현행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법권의 영역임을 상기할 때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준사법권을 수행하겠다는 말이 된다.

둘째, 이러한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은 사업자가 자기 통신망에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사실상 모두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제36조) 각 사업장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치를 처리하는 '불법정보처리자'(제37조)를 두도록 했을 뿐 아니라 소속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제65조)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실상 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검열을 수행하도록 강제하여 통신상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sup>2)</sup>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위헌여부판단의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sup>3)</sup>

셋째,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시행된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 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filtering)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이어 보이는 이 구상은 등급의 기준을 만들고, 판단하고, 부과하는 모든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과함으로써 등급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검열이 되고 말았다.<sup>4)</sup>

이 법률안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정보'에만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강제하

고 나머지는 정보제작자의 '자율 등급'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지만, '청소년 유해 정보'의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한 혼행 법률 하에서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말이다. 특히 제작자에 의해 스스로 매겨진 '자율 등급'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고 그 등급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기준에 맞출 때까지 서비스가 거부되도록 하고 있어, '자율 등급'이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특히 실행 계획에 따르면 글이나 그림에 대한 등급의 적정성 판단을 일차적으로 기계(로봇)가 수행하도록 하여 무분별하고 포괄적인 차단, 즉 겸열을 예감케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의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다. 언제까지 청소년 보호의 논리로 권력의 '매체 통제'가 정당화되어야 할까? 정보가 범람하는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스스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독해능력(literacy) 교육이다. 제도 교육의 실패가 공공연히 지적되고 성교육도 개방적이 되어야 호소력을 갖는 시대에 청소년이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언제까지 국가가 결정할 것인가. 매번 표현의 자유 시비를 일으키며 무리하게 추진되는 이런 시도들은 사실상 청소년 보호보다는, 기술적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손쉬워진 '매체 통제'를 집행하는데 그 본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군대는 그냥 놔두면 적을 만들어 전쟁을 하려 하고, 권력은 그냥 놔두면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하려" 하는 법이다.<sup>5)</sup>

특히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연구자도 드나드는 도서관에 선별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제34조)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sup>6)</sup> 학교에 선별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할지의 유무 역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학교장 혹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자치 기구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선별차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여러 나라에서 정부와 사회단체들 간에 계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자프라이버시권정보센터(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에서는 "... 아동들이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선별차단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의 교육적 가치를 말소시킬 것이다 ... 불건전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매우 훌륭한 자원이라는 핵심 지점이 간과되고 말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sup>7)</sup> 게다가 준비에만 총 15억의 세금이 소요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시행되는 순간부터 계속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요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는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시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이 법안의 '불순한' 목적을 더욱 의심케 하는 대목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들이다.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질서확립법'에서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 로그 기록, 채팅 등 이용기록, 인터넷 방송 내용을 사업자가 언제나 기록하고 있다가 수사 기관이 요청할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영장이 없이도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제24조, 제38조, 제48조, 제52조) 게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불량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39조)은 본 법률의 취지인 개인정보보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겠다.

이렇게 이용자와 이용자의 행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 정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이용자를 컴퓨터 범죄 혐의자로 간주하고 이용자의 권리와 익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밖에도 일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사업자의 이해에 맞게 개악되고 정보통신부 산하에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이 법안의 문제점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설득력이다.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범죄 방지', '통신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이 권력에 의한 일상적인 네트워크 검열과 감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국가가 통제하는 '표현'은 정치 윤리 - 즉 선이 분명한 신념의 영역이었다. 이제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사회 윤리까지 통치한다. 구조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로 환원되면서 더욱 개별화되었다. 그러나 몇 년째 되풀이되는 '음란 매체' 시비에서 우리는 '예술과 음란의 경계'만 따졌다. 하지만 예술과 비예술에는 경계가 없으며 음란/성은 정치/구조의 문제이다. 특히 온라인에 올라오는 표현들은 '예술적으로 승화된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편집자의 권리가 사라지고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목소리가 날 것으로 노출되며, 그래서 거칠다. 이 무질서는 궁극적으로 자유와 민주이다. 반면 사회운동진영은 화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건전한 사회 윤리'라는 이데올로기에 승복했기 때문에 '음란' 시비를 방조했다. 아니, 최근 연일 계속되는 조선일보의 '위험한 온라인' 논리는 사실 그간 우리에게도 먹혀들던 논리였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른 사람의 표현에는 불편해 했고 편집하고 싶어했다. 개인정보 침해<sup>8</sup>)나 온라인 성폭력 문제에는 이해가 쉽고 무능했다.<sup>9)</sup>

그러나 '청소년 보호 논리'는 이미 '청소년 보호'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또한 온라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질서확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와 정보제공자에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당사자로 포함된다. 이 지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다. 날 것들의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고 '건전한 사회 윤리'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서는 매우 다급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통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근거 법률이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가 지난 해 헌법 소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인 7월 12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내용 등급 시행을 골자로 하는 '획기적' 법률을 마련했다고 발표하는 등 언론 플레이로부터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기 위해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법률안 공청회를 즈음해 YMCA나 여성단체연합과 같은 청소년·여성단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를 비롯한 노동단체,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센터나 피스넷(PeaceNet)과 같은 정보단체를 망라한 27개 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긴 했지만, 이 법률안을 폐기하기까지 앞으로의 행로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권력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와 정면 승부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 각주

- 1)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은 음란물과 폭력을 등 불건전한 통신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률로 미국의 전기통신법 제5장을 약칭하는 말이다. 이 법은 1997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 2) 이 말은 사업자에게 면책권을 주자는 뜻이 아니라, 전자매체에서 '편집권'을 인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BBS통신망을 신문처럼 편집자의 개입이 보장되는 매체로 보고 표현에 대한 사업자의 (검열) 책임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서 주요한 쟁점이다.
- 3) 위 95현가16결정.
- 4) 국가적 수준에서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자율'이라는 명목보다는 보다 완벽한 '통제'를 선택할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 <해외실사 종합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의 등급제가 보다 강력한 제도적·행정적 강제력을 띠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 데서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요 관심을 읽을 수 있다. <http://www.rating.or.kr>.
- 5) 김기중, 온라인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권력집중현상을 경계한다.
- 6) 1998년 11월 23일,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재판소는 버지니아주의 루던 카운티 공공도서관 (Loudoun County Public Library)의 선별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이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97년 10월 이 도서관은 '아동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모든 인터넷 단말기에 설치한 바 있다. 판결의 이유는, 선별차단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아동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성인의 접속까지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 7) <http://www2.epic.org/reports/filter-report.html>. 번역본은 여기 참조.
- 8) 간혹 진보네트워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판·비방의 글을 올린 이용자를 추적해 달라는 사회단체들의 요청을 받는다. 이런 요구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로그 기록을 제공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보네트워크가 이 정보들을 수사 기관에게 제공하지 않는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 9) 이런 문제의식에서 최근 노동네트워크에서는 사회단체들의 게시판 운영 원칙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http://www.nodong.net>.